|  |  |  |
| --- | --- | --- |
| **2.1.20 선물거래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627호  《<선물거래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이 2012년 9월 12일의 국무원 제21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2년 10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며 선물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며 선물거래 각 측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적극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선물거래라 함은 공개적인 집중 거래방식이나 국무원 선물거래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기타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선물계약서 또는 선물권 계약서를 거래의 표적물로 하는 거래활동을 지칭한다.  이 조례에서 선물계약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미래의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 수량의 표적물을 인도하기로 규정한 표준화한 계약서를 지칭한다. 선물계약서에는 상품 선물계약서와 금융 선물계약서 및 기타 선물계약서가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 선물권 계약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매입측이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가격으로 약정한 표적물(선물계약서 포함)을 매입 또는 매출하는 권리를 규정한 표준화한 계약서를 지칭한다.  **제3조** 선물거래활동은 공개․공평․공정 및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기, 물밑거래, 선물거래 가격조작 등 위법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선물거래는 이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선물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인가하였거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기타 거래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선물거래장소 이외에서의 선물거래를 금지한다.  **제5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에 대한 집중,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파출기구는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수권 하에서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한다.  **제2장 선물거래소**  **제6조** 선물거래소 설립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심사하고 인가한다.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장소를 설립하거나 그 어떤 형식으로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하지 못한다.  **제7조**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는 그의 재산전액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선물거래소의 책임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임면한다.  선물거래소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8조** 선물거래소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기한 기업법인이거나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회원 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 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 결제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가 규정한 상황 또는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선물거래소 책임자, 재무회계임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1) 법 위반행위나 규율 위반행위로 직무를 해임당한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책임자 또는 선물회사,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인원으로서 직무 해임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2) 법 위반행위나 규율 위반행위로 자격을 취소당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정보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검증기구의 전문임원으로서 자격 취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제10조** 선물거래소는 이 조례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거래활동의 리스크 통제와 회원 및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거래 장소, 설비, 서비스 제공  (2) 계약 설계, 계약 공개 배정  (3) 거래, 결제, 수불 주선과 감독  (4) 선물거래에 집중적 계약이행 담보를 제공  (5) 정관 및 거래규칙에 따른 회원감독관리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직책.  선물거래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지 못한다. 선물거래소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심사 확인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기 전에는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용 부동산투자 등의 직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선물거래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하기 리스크관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제도  (2) 당일 한 무 부채 결제제도  (3) 등락 폐장제도  (4) 계약보유 액 제한제도와 계약 대량보유자 보고제도  (5) 리스크 준비금제도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리스크 관리제도.  회원급수에 따른 결산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소는 반드시 결산담보금제도를 완벽히 건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선물시장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 선물거래소는 정관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하기 각호에 해당한 긴급조치를 결정함과 아울러 즉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증금 증가  (2) 등락 폐장 폭 조정  (3) 회원 또는 고객의 계약 최대보유량 제한  (4) 잠시 거래 중지  (5) 기타 긴급 조치.  전항에서의 비상상황이란 거래과정에서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적 돌발사건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가리킨다.  비상상황이 소실된 후 선물거래소는 지체없이 긴급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제13조** 선물거래소가 하기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정관, 거래규칙의 제정 또는 수정  (2) 거래품목의 상장, 정지, 취소 또는 회복  (3) 계약의 공개, 수정 또는 종지  (4) 주소 또는 영업장소의 변경  (5) 합병, 분립 또는 해산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소의 새로운 거래품목 상장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선물거래소의 소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단, 우선 선물 거래장소의 운영과 시설의 개선을 위한 수요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선물회사**  **제15조** 선물회사는《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이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한. 선물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구이다. 선물회사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위장 설립하여 선물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부합하고 하기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자본금이 최저 인민폐 3,000만원에 달하여야 한다.  (2)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임직자격을 갖추고 종업원은 선물종업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회사 정관이 있어야 한다.  (4) 주요 주주와 실제 통제 자는 지속적 영리능력을 소지하고 덕망이 있고 최근 3년간 중대한 법 위반 규정,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적격의 영업장소와 업무시설이 있어야 한다.  (6) 건전한 리스크 관리제도와 내부 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의 신중성원칙과 제반업무의 리스크수준에 근거하여 등록자본금 최저 한정 액을 높일 수 있다. 주주는 통화 또는 선물회사 영위에 필수적인 비 통화 재산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통화 출자 비율이 85%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 설립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감독관리의 신중성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선물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선물회사 업무는 허가 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그 상품선물, 금융선물의 업무품종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물회사는 경내 선물 중개업무 영위를 신청하는 외에 해외 선물 중개업무, 선물 투자자문업무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선물업무의 영위를 신청할 수 있다.  선물회사는 선물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법률, 법규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선물회사는 선물 자영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장종사하지 못한다.  선물회사는 주주, 실제 통제 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융자를 제공하지 못하며 대외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8조** 선물회사는 중개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위탁을 받고 자신의 명위로 고객을 위하여 선물거래를 진행하며 거래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19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에 해당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합병, 분립, 조업정지 해산 또는 파산  (2) 업무범위 변경  (3) 등록자본금 변경 및 주주권 구조 조정  (4) 5% 이상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새로 증가하였거나 또는 지주 주주의 변경  (5) 해외 선물 유사 경영기구의 설립, 인수, 지분 참여 또는 종료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전항 제(3)호, 제(6)호에 나열한 사항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항에 나열한 기타 사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에 해당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파출기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법정대표자 변경  (2) 주소 또는 영업장소 변경  (3) 경내 분지기구의 설립 또는 종지  (4) 경내 분지기구의 경영범위 변경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파출기구는 전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나열한 사항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항 제(3)호에 나열한 사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선물회사 또는 그 분지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허가법》제70조가 규정한 상황이나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선물업무 허가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1) 회사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말소한 상황  (2)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을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개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상황  (3) 주동적으로 말소신청을 제출한 상황  (4)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상황.  선물회사는 영업허가증 말소 전에 관련 선물업무를 청산하고 법에 따라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선물회사 분지기구는 영업허가증 말소 전에 영업활동을 종지하고 고객의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물회사는 업무관리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정보 공개제도를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보증금 예탁, 관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물거래소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소에 계약 대량보유자와 거래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선물 투자자문에 종사하는 기타 선물영위기구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업무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4장 선물거래의 기본원칙**  **제24조** 선물거래소에서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 회원이 하여야 한다.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외기구는 건물거래소에서 특정 품목의 선물거래에 종사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25조** 선물회사가 고객의 선물거래 위탁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먼저 고객에게 리스크 설명서를 제시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고객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고객의 위탁 없이 또는 고객의 위탁내용을 떠나서 자의로 선물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이윤보장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업무 중 고객과 이윤 공동향유나 리스크 공동부담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하기 단위와 개인은 선물거래에 종사하지 못하며 선물회사가 그들의 위탁을 받고 선물거래를 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 선물업협회의 임직원  (3) 증권, 선물 시장 진출금지 자  (4) 구좌개설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위와 개인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한 기타 단위와 개인.  **제27조** 고객은 서면, 전화, 인터넷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방식으로 선물회사에 거래지령을 하달할 수 있다. 고객의 거래지령은 명확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선물회사가 중요 사항을 숨기거나 기타 부정수단으로 거래지령을 발송하도록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선물거래소는 상장품목의 계약거래 수량, 거래가격, 계약보유량,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개장가격과 폐장가격, 기타 공포하여야 하는 시세를 적시에 공포하고 실시간 시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가격 예측정보를 발표하지 못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소의 허가 없이 선물거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29조** 선물거래에서는 보증금제도를 엄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선물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금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와 선물거래소가 정한 표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자유자금과는 별도로 예탁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은 회원소유이며 회원의 거래결제에 사용하는 외에 기타에 유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선물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은 고객의 소유이며 하기 이체상황에 사용하는 외에 기타에 유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1) 고객의 요구에 의한 이용가능 자금 지불  (2) 고객의 보증금, 수수료, 세금 지불  (3)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상황.  **제30조** 선물회사는 매 고객마다 단독구좌를 개설하고 거래코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코드를 혼동하면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선물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동시에 기타 선물 업무를 영위하는 선물회사는 업무분리제도와 자금 분리제도를 엄하게 집행하여야 지 혼합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와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준비금을 인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선물거래에서의 요금 수취항목, 요금기준,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4조** 선물거래의 결제는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주선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 한 무부채 결제제도를 시행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에 즉시 결제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의 결제결과에 의거하여 고객과 결제하고 결제결과를 고객과 약정한 방식으로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은 자신의 계약보유량을 제때에 조회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선물거래소 회원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즉시 보증금을 추가보완하거나 지체로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회원이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기간 내에 보증금을 추가보완하지 못하거나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선물거래소가 당해 회원의 계약 보유량을 강행 정리하여야 하며 계약 보유량 강행정리로 발생한 비용과 조성한 손실은 당해 회원이 부담한다.  고객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즉시 보증금을 추가보완하거나 자체로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고객이 선물회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보증금을 추가보완하지 못하거나 자체로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선물회사가 당해 고객의 계약보유량을 강행 정리하여야 하며 계약 보유량 강행정리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은 당해 고객이 부담한다.  **제36조** 선물거래의 인도는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진행한다.  인도창고는 선물거래소가 지정한다. 선물거래소는 화물의 인도총량을 제한하지 못하며 인도창고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불창고가 하기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창하증권을 제시하는 행위  (2) 선물거래 업무규칙을 위반하고 인도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3) 선물거래와 관련한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4)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는 기태 행위.  **제37조** 회원이 선물거래에서 위약하는 경우 선물거래소는 먼저 회원의 보증금으로 위약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물거래소가 리스크준비금과 자유자금으로 위약책임을 대리 부담하고 당해 회원에 대한 상응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고객이 선물거래에서 위약했을 경우 선물회사는 먼저 그 고객의 보증금으로 위약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우 선물회사는 리스크준비금과 자유자금으로 위약책임을 대리 부담하고 그로서 당해 고객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  **제38조** 회원 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소는 결제회원을 상대로 결제담보금을 수취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결제회원만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수취 또는 추가수취하며 결제담보금, 리스크준비금, 자유자금으로 위약책임을 대리 부담하고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한다. 비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 보증금 수취와 추가수취, 위약책임 대리부담 및 기타 관련 조치 채취 등은 결제회원이 집행한다.  **제39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선물회사의 결제회원은 선물거래, 결제, 인도 자료의 완벽성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선물거래 관련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하여서는 아니 되며 악의적으로 내통하고 연합으로 매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선물거래가격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금, 재정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업 금융기구의 선물거래 융자업무 또는 담보업무 종사자격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다.  **제42조** 경내외 선물거래를 하는 국유 또는 국유지주 기업은 헤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국유자산 선물시장 진출 관련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부서의 규정을 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해외 상품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경내 단위와 개인의 선물거래 품목을 확인 인가하여야 한다.  해외 선물계정하의 환 구매, 환 결제, 환 수지는 국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경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 은행업 감독관리기구, 외환관리부서 등의 관력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시행한다.  **제5장 선물업협회**  **제44조** 선물업협회는 선물업계의 자율성 조직으로서 사단법인이다.  선물회사 및 선물영위에 종사하는 기타 기구는 선물업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선물업협회의 권력기구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 회원총회이다.  선물업협회 정관은 회원총회가 제정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선물업협회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산생한다.  **제46조** 선물업협회는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선물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을 준수하도록 회원을 교양하고 단속한다.  (2)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계 자율성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의 행위를 감독, 검시하며 협회 정관과 자율성 규칙을 위반하는 회원은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준다.  (3) 선물 종업원에 대한 자격인정, 관리, 사직을 책임진다.  (4) 선물업무와 관련한 고객의 투서를 수리하고 회원과 회원 사이, 회원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조정한다.  (5) 법에 의거하여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회원의 건의와 요구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반영한다.  (6) 선물 종업원의 업무훈련을 주선하고 회원 간의 업무교류를 전개한다.  (7) 회원이 선물업의 발전, 영위 및 관련 내용을 연구하도록 주선한다.  (8) 선물업협회 정관이 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선물업협회의 업무활동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47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 감독관리 시에 법에 의거하여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선물시장 감독관리 관련 규약과 규칙을 제정하고 법에 의거하여 심사인가권리를 이행한다.  (2) 품목의 상장, 거래, 결제, 인도 등의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3)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 보증금 예탁안전 관리통제기구,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 인도창고 등의 관련 시장참여자의 업무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4) 선물 종업 자의 자격표준과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감독한다.  (5) 선물거래 정보공개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6) 선물업협회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7) 선물시장 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사출, 처리한다.  (8) 선물시장 감독관리 관련 국제교류, 합작 활동을 전개한다.  (9)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제48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른 직책이행 시에 하기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감독통제기구, 인도창고에 대한 현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불법 용의행위 발생장소에 진입하여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  (3) 당사자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단위나 개에게 질문을 제출하고 조사대상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재산권리 등기 등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5) 당사자,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단위와 개인의 선물거래기록, 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이전, 은닉, 훼손 가능한 서류와 자료는 봉인할 수 있다.  (6)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단위의 보증금장부와 은행계좌를 사열할 수 있다.  (7) 선물거래 가격조작, 물밑거래 등의 중대한 선물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주요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조사대상 사건 당사자의 선물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기간은 15개 거래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에는 30개 거래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감독통제기구는 재무회계보고서, 업무자료,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가 상정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심사확인하고 심사확인보고서를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심사확인 담당자는 심사확인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심사확인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인도창고 및 선물회사의 주주, 실지 통제 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감독 검사 조사하는 경우 검사, 조사 대상 단위나 개인은 이에 협력하여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지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기타 관련 단위와 개인도 지지, 협력하여야 한다.  **제51조** 국가는 선물시장 발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선물투자자 보장기금을 내온다.  선물투자자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의 구체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2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관리통제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고객과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및 선물보증금 예탁 관리은행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보증금 예탁 안전관리통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증금안전에 대한 감독통제를 실시하며 매일 검사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상황을 보아서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및 기타 종업원에 대한 자격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55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의 지속적 영위규칙을 제정하여 선물회사의 정미자본과 정미자산의 비례, 정미자본과 경내 선물중개, 해외 선물중개 업무규모의 비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례 등 리스크 감독관리지표를 규정하고 선물회사 및 그 지점의 영위조건, 리스크, 내부통제, 보증금 예탁관리, 관련거래 등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선물회사 및 그 지점이 지속적 영위규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리스크가 출현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회사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에 대하여 미팅, 제시, 신용기록 기입 등의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거나 기한부 정돈을 명하고 그 정돈상황을 검사인수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기한을 경과하여도 개정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선물회사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거나 법과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용의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상황에 따라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부 선물업무의 제한 또는 잠시 정지  (2) 새로운 업무 또는 지점 설립 정지  (3) 이윤분배 제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에 대한 보수 지불, 복지 제공 정지  (4) 재산양도나 재산상의 기타 권리설정 제한  (5)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또는 관련 부서, 지점의 책임자 경질명령 또는 기타 권리 제한  (6) 선물회사 자유자금이나 리스크 준비금의 조달과 사용 제한  (7) 지주주주의 주권양도를 명하거나 관련 주주의 주주권리 행사 제한.  정돈을 거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고 지속적 영위규칙에 부합하는 선물회사에 대하여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검사인수일로부터 3일 내에 이미 취한 관련 조치를 해제한다.  정돈하여도 지속적 영위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 영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선물회사에 대하여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그의 일부분 또는 전반 업무허가를 취소하고 일부 지점을 폐쇄할 권한이 있다.  **제57조** 선물회사가 불법영위하거나 엄중한 리스크가 발생하여 선물시장의 질서를 엄중하게 해치고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당해 선물회사에 대하여 종업중시정돈을 명하고 기타 기구에 위탁관리를 시키거나 인수관리하게 하는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당해 선물회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하기 각호에 해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국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그의 출국을 저지한다.  (2) 사법기관에 신청하여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기타방식에 의한 처분이나 기타 권리설정을 금지한다.  **제58조** 선물회사의 주주가 위장출자하거나 출자도피 행위가 있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가 소지한 선물회사 주권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주주가 전항의 요구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선물회사의 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당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 선물시장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리스크 조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0조**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는 선물회사의 신중성 영위와 리스크관리 및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그의 개진과 경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회사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당해 소프트웨어 관력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협력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관련 자료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61조** 선물회사가 중대한 소송, 중재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주권이 동결 또는 담보로 이용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물회사의 관련 주주, 실지 통제 자는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이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등 시장참여 관련자에게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관련 부문과 감독관리 정보공유, 조율 협력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기타 국가나 지구의 선물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 합작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 등 관련 단위와 그 임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며 공정 청렴하고 국가기밀과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정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65조** 선물거래소,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이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회원을 받아들이는 행위  (2) 규정을 위반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3) 규정을 위반하고 수익을 사용, 분배하는 행위  (4)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시세를 공포하지 않거나 가격 예측정보를 발표하는 행위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7)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제담보금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리스크준비금을 규정대로 인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9)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0) 회원의 실물 인도총량을 제한하는 행위  (11) 자격이 없는 선물종업원을 등용하는 경우  (1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전항 각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규율처분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 제1항 제(2)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수취한 수수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가 이 조 제1항 재(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이 이 조 제1항 제(9)호, 제(12)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제66조** 선물거래소가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업무정지 정돈을 명한다.  (1) 인가 없이 제멋대로 이 조례 제13조에 열거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  (2) 보증금이 부족한 회원의 선물거래를 허용한 경우  (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직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수취하였거나 보증금을 유용한 경우  (5) 선물의 거래, 결제, 인도 자료를 위조, 개찬하였거나 규정대로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당일 무부채결제제도, 등락폐장제도, 선물 계약보유량 한정제도, 계약 대량보유자 보고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8)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전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규율처분하고 1만 위안 이상, 10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 선물회사결제회원이 이 조 제1항 (2)호, (4)~(8)호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가 이 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8)호가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제67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한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거나 선물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1)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나 개인의 위탁을 접수한 상황  (2) 보증금이 부족한 고객의 선물거래를 허용한 상황  (3) 인가 없이 자의로 이 조례 제19조, 제20조가 규정한 사항을 취급한 상황  (4) 규정을 위반하고 선물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한 상황  (5) 선물 자영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장 종사한 상황  (6) 주주, 실제 통제 자 또는 그 관련자에게 융자를 제공하거나 대외담보를 제공한 상황  (7)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8) 규정에도 불구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항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서류,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상황  (9)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가 선물회사 신중성 영위, 리스크 관리 및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  (10) 리스크 준비금을 규정대로 인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황  (11) 선물거래, 결제, 인도 관련 자료를 위조, 개찬하거나 규정대로 보관하지 아니하는 상황  (12) 자격이 없는 선물종업원을 등용하는 상황  (13) 선물 업무허자증이나 영위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출, 매매하는 상황  (14) 코드 혼동하여 거래하는 상황  (1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상황  (1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선물회사가 전항이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임직자격, 종업원자격을 잠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선물회사 이외의 기타 선물영위기구가 이 조 제1항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선물회사의 주주, 실지 통제자 또는 기타 관련자가 인가 없이 자의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또는 타인의 위탁을 접수하여 선물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면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고,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허위기재가 있고 오인 가능한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8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한 고객사기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거나 선물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1) 고객에게 이윤취득을 보증하거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리스크 설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중개활동에서 고객과 이익 공동향수, 리스크 공동부담을 약속하는 경우  (3) 고객의 위탁을 규정대로 접수하지 않거나 고객의 위탁내용을 떠나서 자의로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4) 중요사항을 감추거나 부정수단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지령을 발송하는 경우  (5) 고객에게 허위 거래성과를 제공하는 경우  (6) 고객의 거래지령을 선물회사에 하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고객의 보증금을 유용하는 경우  (8)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에 보증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의 보증금을 이체하는 경우  (9)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고객을 사기하는 기타 행위.  선물회사가 전항이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임직자격, 종업자격을 잠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어떤 단위나 개이든지 선물거래 관련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하여 선물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9조**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이 허위 신청서류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중요사실을 감추고 선물업무 허가를 사취한 경우 그 선물업무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70조** 선물거래 내부정보를 아는 자 또는 선물거래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자가 선물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거나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여 타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물밑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도 경고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의 직원이 물밑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선물거래 가격을 조종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동모하여 자금우위, 계약보유 우위를 집중하거나 정보우위를 이용하여 연합으로 또는 연속 계약을 매매함으로써 선물거래가격을 조종하는 행위  (2) 미리 내통하고 약정한 시간, 가격, 방식으로 선물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선물거래가격이나 선물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매매함으로써 선물거래가격이나 선물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선물시장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물을 사재는 행위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선물거래가격을 조종하는 기타 행위.  단위가 전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인도창고가 이 조례 제36조 제2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선물거래 잠시정지를 명하거나 인도창고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기업이 기업의 국유자산 선물시장 진출 관련 이 조례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물거래활동을 하거나 단위, 개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대부자금, 재정자금으로 선물거래활동을 하는 경우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강직 나아가서는 제명 규율처분을 가한다.  **제74조** 경내 단위나 개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해외 선물거래를 잠시 정지하게 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5조** 선물거래장소를 불법 설립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선물거래활동을 조직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물회사 또는 기타 선물영위기구를 불법 설립하거나 제멋대로 선물업무에 종사한 경우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서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6조**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검사에 협력을 거부하거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소프트웨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소프트웨어 자료가 허위자료이고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의 중개 서비스기구가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시한 서류에 허위기재가 있고 오인 가능한 진술이 있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관련 업무허가를 잠시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8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였고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당해 개인과 당해 단위의 직접 책임자의 선물시장 진출금지를 선포한다.  **제79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관리기구,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 등 관련단위의 임직원이 그가 알고 있는 국가기밀이나 회원, 고객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리를 위한 부정, 독직, 직권남용, 회뢰 등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가한다.  **제80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1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은 이 조례에 이미 규정된 이외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한다. 여타 관련부서의 법정직권과 관련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여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여타 관련부서의 법정직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여타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하다.  **제8장 부  칙**  **제82조** 이 조례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상품 선물계약서라 함은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및 기타 상품과 관련 지수제품을 표적물로 하는 선물계약서를 지칭한다.  (2) 금융 선물계약서라 함은 유가증권, 이자율, 환시세 등 금융제품 및 관련 지수제품을 표적물로 하는 선물계약서를 지칭한다.  (3) 보증금이라 함은 선물거래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자금이나 제출한, 가치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표준 창고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서 결제와 보증이행에 사용한다.  (4) 결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공포한 결제가격에 따라 거래 쌍방의 거래결과에 대해 진행하는 자금청산과 이체를 지칭한다.  (5) 인도라 함은 계약 만기 시에 선물거래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거래 양측이 계약서에 기재된 표적물 소유권의 이전을 확인하거나 규정된 결제가격에 따른 현찰차액 결제를 통하여 기간 만료 시에 트리밍하지 아니한 계약의 종료과정을 지칭한다.  (6) 트리밍이라 함은 선물거래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품목과 수량이 결제월과 동일하게, 그러나 거래방향은 정반대로 매입 또는 매출함으로써 선물거래를 종료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7) 계약 보유량이라 함은 선물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트리밍하지 아니한 계약의 수량을 지칭한다.  (8) 계약 보유량 제한액이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선물거래자 계약 보유량의 최고  액을 지칭한다.  (9) 표준 창고증권이라 함은 인도하는 창고가 발급하고 선물거래소가 인정한 표준화한 화물 인출증빙을 지칭한다.  (10) 등락 폐장이라 함은 1개 거래일에서 계약에 규정된 상하 등락 폭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견적은 무효로 간주하고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11) 내막정보라 함은 선물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부서가 제정한, 선물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선물거래소가 한, 선물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선물거래소 회원, 고객의 자금이나 거래 동향,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기타 중요한 정보를 지칭한다.  (12) 내막정보를 알 수 있는 자라 함은 관리지위, 감독지위 또는 직업지위로 하여 또는 고원, 전임고문이 직무상 내막정보를 접촉하거나 알 수 있는 자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선물거래소의 관리자 및 내막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직무의 종업원,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나 기타 관련부서의 직원 그리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관련자를 망라한다.  **제83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 전문결제기구의 설립을 비준하여 전문 선물거래소의 결제 및 관련 직책을 이행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해외기구가 경내에 설립한 선물 매입 또는 지분투자 영위기구, 해외 선물영위기구가 경내에 설립한 지점(사무소)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외환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시행한다.  **제85조** 선물거래소를 제외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선물거래는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6조** 선물거래에서 제외된 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기타 거래활동은 국가 관련부서가 감독관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이 조례는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6월 2일에 국무원이 반포한 《선물거래 관리 잠정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  | **期货交易管理条例**  国务院令第627号  《国务院关于修改〈期货交易管理条例〉的决定》已经2012年9月12日国务院第216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2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2012年10月2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期货交易行为，加强对期货交易的监督管理，维护期货市场秩序，防范风险，保护期货交易各方的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促进期货市场积极稳妥发展，制定本条例。  **第二条**　任何单位和个人从事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应当遵守本条例。  　 本条例所称期货交易，是指采用公开的集中交易方式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方式进行的以期货合约或者期权合约为交易标的的交易活动。  　 本条例所称期货合约，是指期货交易场所统一制定的、规定在将来某一特定的时间和地点交割一定数量标的物的标准化合约。期货合约包括商品期货合约和金融期货合约及其他期货合约。  　 本条例所称期权合约，是指期货交易场所统一制定的、规定买方有权在将来某一时间以特定价格买入或者卖出约定标的物（包括期货合约）的标准化合约。  **第三条**　从事期货交易活动，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和诚实信用的原则。禁止欺诈、内幕交易和操纵期货交易价格等违法行为。  **第四条**　期货交易应当在依照本条例第六条第一款规定设立的期货交易所、国务院批准的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期货交易场所进行。  　 禁止在前款规定的期货交易场所之外进行期货交易。  **第五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期货市场实行集中统一的监督管理。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派出机构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和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授权，履行监督管理职责。    **第二章　期货交易所**  **第六条**　设立期货交易所，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审批。  　 未经国务院批准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设立期货交易场所或者以任何形式组织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  **第七条**　期货交易所不以营利为目的，按照其章程的规定实行自律管理。期货交易所以其全部财产承担民事责任。期货交易所的负责人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任免。  　 期货交易所的管理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制定。  **第八条**　期货交易所会员应当是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登记注册的企业法人或者其他经济组织。  　 期货交易所可以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的期货交易所会员由结算会员和非结算会员组成。  **第九条**　有《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一百四十七条规定的情形或者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期货交易所的负责人、财务会计人员：  　 （一）因违法行为或者违纪行为被解除职务的期货交易所、证券交易所、证券登记结算机构的负责人，或者期货公司、证券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人员，自被解除职务之日起未逾5年；  　 （二）因违法行为或者违纪行为被撤销资格的律师、注册会计师或者投资咨询机构、财务顾问机构、资信评级机构、资产评估机构、验证机构的专业人员，自被撤销资格之日起未逾5年。  **第十条**　期货交易所应当依照本条例和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规定，建立、健全各项规章制度，加强对交易活动的风险控制和对会员以及交易所工作人员的监督管理。期货交易所履行下列职责：  　 （一）提供交易的场所、设施和服务；  　 （二）设计合约，安排合约上市；  　 （三）组织并监督交易、结算和交割；  　 （四）为期货交易提供集中履约担保；  　 （五）按照章程和交易规则对会员进行监督管理；  　 （六）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职责。  　 期货交易所不得直接或者间接参与期货交易。未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审核并报国务院批准，期货交易所不得从事信托投资、股票投资、非自用不动产投资等与其职责无关的业务。  **第十一条**　期货交易所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下列风险管理制度：  　 （一）保证金制度；  　 （二）当日无负债结算制度；  　 （三）涨跌停板制度；  　 （四）持仓限额和大户持仓报告制度；  　 （五）风险准备金制度；  　 （六）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风险管理制度。  　 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的期货交易所，还应当建立、健全结算担保金制度。  **第十二条**　当期货市场出现异常情况时，期货交易所可以按照其章程规定的权限和程序，决定采取下列紧急措施，并应当立即报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  　 （一）提高保证金；  　 （二）调整涨跌停板幅度；  　 （三）限制会员或者客户的最大持仓量；  　 （四）暂时停止交易；  　 （五）采取其他紧急措施。  　 前款所称异常情况，是指在交易中发生操纵期货交易价格的行为或者发生不可抗拒的突发事件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异常情况消失后，期货交易所应当及时取消紧急措施。  **第十三条**　期货交易所办理下列事项，应当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  　 （一）制定或者修改章程、交易规则；  　 （二）上市、中止、取消或者恢复交易品种；  　 （三）上市、修改或者终止合约；  　 （四）变更住所或者营业场所；  　 （五）合并、分立或者解散；  　 （六）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事项。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期货交易所上市新的交易品种，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的意见。  **第十四条**　期货交易所的所得收益按照国家有关规定管理和使用，但应当首先用于保证期货交易场所、设施的运行和改善。    **第三章　期货公司**  **第十五条**　期货公司是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和本条例规定设立的经营期货业务的金融机构。设立期货公司，应当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并在公司登记机关登记注册。  　 未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设立或者变相设立期货公司，经营期货业务。  **第十六条**　申请设立期货公司，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规定，并具备下列条件：  　 （一）注册资本最低限额为人民币3000万元；  　 （二）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具备任职资格，从业人员具有期货从业资格；  　 （三）有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公司章程；  　 （四）主要股东以及实际控制人具有持续盈利能力，信誉良好，最近3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  　 （五）有合格的经营场所和业务设施；  　 （六）有健全的风险管理和内部控制制度；  　 （七）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条件。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根据审慎监管原则和各项业务的风险程度，可以提高注册资本最低限额。注册资本应当是实缴资本。股东应当以货币或者期货公司经营必需的非货币财产出资，货币出资比例不得低于85%。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在受理期货公司设立申请之日起6个月内，根据审慎监管原则进行审查，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未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委托或者接受他人委托持有或者管理期货公司的股权。  **第十七条**　期货公司业务实行许可制度，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按照其商品期货、金融期货业务种类颁发许可证。期货公司除申请经营境内期货经纪业务外，还可以申请经营境外期货经纪、期货投资咨询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期货业务。  　 期货公司不得从事与期货业务无关的活动，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另有规定的除外。  　 期货公司不得从事或者变相从事期货自营业务。  　 期货公司不得为其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提供融资，不得对外担保。  **第十八条**　期货公司从事经纪业务，接受客户委托，以自己的名义为客户进行期货交易，交易结果由客户承担。  **第十九条**　期货公司办理下列事项，应当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  　 （一）合并、分立、停业、解散或者破产；  　 （二）变更业务范围；  　 （三）变更注册资本且调整股权结构；  　 （四）新增持有5%以上股权的股东或者控股股东发生变化；  　 （五）设立、收购、参股或者终止境外期货类经营机构；  　 （六）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事项。  　 前款第三项、第六项所列事项，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前款所列其他事项，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第二十条**　期货公司办理下列事项，应当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派出机构批准：  　 （一）变更法定代表人；  　 （二）变更住所或者营业场所；  　 （三）设立或者终止境内分支机构；  　 （四）变更境内分支机构的经营范围；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事项。  　 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第五项所列事项，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派出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前款第三项所列事项，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派出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第二十一条**　期货公司或者其分支机构有《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第七十条规定的情形或者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依法办理期货业务许可证注销手续：  　 （一）营业执照被公司登记机关依法注销；  　 （二）成立后无正当理由超过3个月未开始营业，或者开业后无正当理由停业连续3个月以上；  　 （三）主动提出注销申请；  　 （四）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期货公司在注销期货业务许可证前，应当结清相关期货业务，并依法返还客户的保证金和其他资产。期货公司分支机构在注销经营许可证前，应当终止经营活动，妥善处理客户资产。  **第二十二条**　期货公司应当建立、健全并严格执行业务管理规则、风险管理制度，遵守信息披露制度，保障客户保证金的存管安全，按照期货交易所的规定，向期货交易所报告大户名单、交易情况。  **第二十三条**　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的其他期货经营机构应当取得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业务资格，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制定。    **第四章　期货交易基本规则**  **第二十四条**　在期货交易所进行期货交易的，应当是期货交易所会员。  　 符合规定条件的境外机构，可以在期货交易所从事特定品种的期货交易。具体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制定。  **第二十五条**　期货公司接受客户委托为其进行期货交易，应当事先向客户出示风险说明书，经客户签字确认后，与客户签订书面合同。期货公司不得未经客户委托或者不按照客户委托内容，擅自进行期货交易。  　 期货公司不得向客户作获利保证；不得在经纪业务中与客户约定分享利益或者共担风险。  **第二十六条**　下列单位和个人不得从事期货交易，期货公司不得接受其委托为其进行期货交易：  　 （一）国家机关和事业单位；  　 （二）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期货业协会的工作人员；  　 （三）证券、期货市场禁止进入者；  　 （四）未能提供开户证明材料的单位和个人；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不得从事期货交易的其他单位和个人。  **第二十七条**　客户可以通过书面、电话、互联网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方式，向期货公司下达交易指令。客户的交易指令应当明确、全面。  　 期货公司不得隐瞒重要事项或者使用其他不正当手段诱骗客户发出交易指令。  **第二十八条**　期货交易所应当及时公布上市品种合约的成交量、成交价、持仓量、最高价与最低价、开盘价与收盘价和其他应当公布的即时行情，并保证即时行情的真实、准确。期货交易所不得发布价格预测信息。  　 未经期货交易所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发布期货交易即时行情。  **第二十九条**　期货交易应当严格执行保证金制度。期货交易所向会员、期货公司向客户收取的保证金，不得低于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规定的标准，并应当与自有资金分开，专户存放。  　 期货交易所向会员收取的保证金，属于会员所有，除用于会员的交易结算外，严禁挪作他用。  　 期货公司向客户收取的保证金，属于客户所有，除下列可划转的情形外，严禁挪作他用：  　 （一）依据客户的要求支付可用资金；  　 （二）为客户交存保证金，支付手续费、税款；  　 （三）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第三十条**　期货公司应当为每一个客户单独开立专门账户、设置交易编码，不得混码交易。  **第三十一条**　期货公司经营期货经纪业务又同时经营其他期货业务的，应当严格执行业务分离和资金分离制度，不得混合操作。  **第三十二条**　期货交易所、期货公司、非期货公司结算会员应当按照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财政部门的规定提取、管理和使用风险准备金，不得挪用。  **第三十三条**　期货交易的收费项目、收费标准和管理办法由国务院有关主管部门统一制定并公布。  **第三十四条**　期货交易的结算，由期货交易所统一组织进行。  　 期货交易所实行当日无负债结算制度。期货交易所应当在当日及时将结算结果通知会员。  　 期货公司根据期货交易所的结算结果对客户进行结算，并应当将结算结果按照与客户约定的方式及时通知客户。客户应当及时查询并妥善处理自己的交易持仓。  **第三十五条**　期货交易所会员的保证金不足时，应当及时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会员未在期货交易所规定的时间内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的，期货交易所应当将该会员的合约强行平仓，强行平仓的有关费用和发生的损失由该会员承担。  　 客户保证金不足时，应当及时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客户未在期货公司规定的时间内及时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的，期货公司应当将该客户的合约强行平仓，强行平仓的有关费用和发生的损失由该客户承担。  **第三十六条**　期货交易的交割，由期货交易所统一组织进行。  　 交割仓库由期货交易所指定。期货交易所不得限制实物交割总量，并应当与交割仓库签订协议，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交割仓库不得有下列行为：  　 （一）出具虚假仓单；  　 （二）违反期货交易所业务规则，限制交割商品的入库、出库；  　 （三）泄露与期货交易有关的商业秘密；  　 （四）违反国家有关规定参与期货交易；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第三十七条**　会员在期货交易中违约的，期货交易所先以该会员的保证金承担违约责任；保证金不足的，期货交易所应当以风险准备金和自有资金代为承担违约责任，并由此取得对该会员的相应追偿权。  　 客户在期货交易中违约的，期货公司先以该客户的保证金承担违约责任；保证金不足的，期货公司应当以风险准备金和自有资金代为承担违约责任，并由此取得对该客户的相应追偿权。  **第三十八条**　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的期货交易所，应当向结算会员收取结算担保金。期货交易所只对结算会员结算，收取和追收保证金，以结算担保金、风险准备金、自有资金代为承担违约责任，以及采取其他相关措施；对非结算会员的结算、收取和追收保证金、代为承担违约责任，以及采取其他相关措施，由结算会员执行。  **第三十九条**　期货交易所、期货公司和非期货公司结算会员应当保证期货交易、结算、交割资料的完整和安全。  **第四十条**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编造、传播有关期货交易的虚假信息，不得恶意串通、联手买卖或者以其他方式操纵期货交易价格。  **第四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违规使用信贷资金、财政资金进行期货交易。  　 银行业金融机构从事期货交易融资或者担保业务的资格，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  **第四十二条**　国有以及国有控股企业进行境内外期货交易，应当遵循套期保值的原则，严格遵守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以及其他有关部门关于企业以国有资产进入期货市场的有关规定。  **第四十三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对境内单位或者个人从事境外商品期货交易的品种进行核准。  　 境外期货项下购汇、结汇以及外汇收支，应当符合国家外汇管理有关规定。  　 境内单位或者个人从事境外期货交易的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银行业监督管理机构、外汇管理部门等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施行。    **第五章　期货业协会**  **第四十四条**　期货业协会是期货业的自律性组织，是社会团体法人。  　 期货公司以及其他专门从事期货经营的机构应当加入期货业协会，并缴纳会员费。  **第四十五条**　期货业协会的权力机构为全体会员组成的会员大会。  　 期货业协会的章程由会员大会制定，并报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备案。  　 期货业协会设理事会。理事会成员按照章程的规定选举产生。  **第四十六条**　期货业协会履行下列职责：  　 （一）教育和组织会员遵守期货法律法规和政策；  　 （二）制定会员应当遵守的行业自律性规则，监督、检查会员行为，对违反协会章程和自律性规则的，按照规定给予纪律处分；  　 （三）负责期货从业人员资格的认定、管理以及撤销工作；  　 （四）受理客户与期货业务有关的投诉，对会员之间、会员与客户之间发生的纠纷进行调解；  　 （五）依法维护会员的合法权益，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反映会员的建议和要求；  　 （六）组织期货从业人员的业务培训，开展会员间的业务交流；  　 （七）组织会员就期货业的发展、运作以及有关内容进行研究；  　 （八）期货业协会章程规定的其他职责。  　 期货业协会的业务活动应当接受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指导和监督。    **第六章　监督管理**  **第四十七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期货市场实施监督管理，依法履行下列职责：  　 （一）制定有关期货市场监督管理的规章、规则，并依法行使审批权；  　 （二）对品种的上市、交易、结算、交割等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进行监督管理；  　 （三）对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期货保证金存管银行、交割仓库等市场相关参与者的期货业务活动，进行监督管理；  　 （四）制定期货从业人员的资格标准和管理办法，并监督实施；  　 （五）监督检查期货交易的信息公开情况；  　 （六）对期货业协会的活动进行指导和监督；  　 （七）对违反期货市场监督管理法律、行政法规的行为进行查处；  　 （八）开展与期货市场监督管理有关的国际交流、合作活动；  　 （九）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责。  **第四十八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依法履行职责，可以采取下列措施：  　 （一）对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交割仓库进行现场检查；  　 （二）进入涉嫌违法行为发生场所调查取证；  　 （三）询问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四）查阅、复制与被调查事件有关的财产权登记等资料；  　 （五）查阅、复制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的期货交易记录、财务会计资料以及其他相关文件和资料；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和资料，可以予以封存；  　 （六）查询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的保证金账户和银行账户；  　 （七）在调查操纵期货交易价格、内幕交易等重大期货违法行为时，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主要负责人批准，可以限制被调查事件当事人的期货交易，但限制的时间不得超过15个交易日；案情复杂的，可以延长至30个交易日；  　 （八）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四十九条**　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应当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报送财务会计报告、业务资料和其他有关资料。  　 对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报送的年度报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指定专人进行审核，并制作审核报告。审核人员应当在审核报告上签字。审核中发现问题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及时采取相应措施。  　 必要时，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要求非期货公司结算会员、交割仓库，以及期货公司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报送相关资料。  **第五十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依法履行职责，进行监督检查或者调查时，被检查、调查的单位和个人应当配合，如实提供有关文件和资料，不得拒绝、阻碍和隐瞒；其他有关部门和单位应当给予支持和配合。  **第五十一条**　国家根据期货市场发展的需要，设立期货投资者保障基金。  　 期货投资者保障基金的筹集、管理和使用的具体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  **第五十二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保证金安全存管监控制度，设立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  　 客户和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以及期货保证金存管银行，应当遵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的规定。  **第五十三条**　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依照有关规定对保证金安全实施监控，进行每日稽核，发现问题应当立即报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根据不同情况，依照本条例有关规定及时处理。  **第五十四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和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以及其他期货从业人员，实行资格管理制度。  **第五十五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制定期货公司持续性经营规则，对期货公司的净资本与净资产的比例，净资本与境内期货经纪、境外期货经纪等业务规模的比例，流动资产与流动负债的比例等风险监管指标作出规定；对期货公司及其分支机构的经营条件、风险管理、内部控制、保证金存管、关联交易等方面提出要求。  **第五十六条**　期货公司及其分支机构不符合持续性经营规则或者出现经营风险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对期货公司及其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采取谈话、提示、记入信用记录等监管措施或者责令期货公司限期整改，并对其整改情况进行检查验收。  　 期货公司逾期未改正，其行为严重危及期货公司的稳健运行、损害客户合法权益，或者涉嫌严重违法违规正在被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调查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区别情形，对其采取下列措施：  　 （一）限制或者暂停部分期货业务；  　 （二）停止批准新增业务或者分支机构；  　 （三）限制分配红利，限制向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支付报酬、提供福利；  　 （四）限制转让财产或者在财产上设定其他权利；  　（五）责令更换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或者有关业务部门、分支机构的负责人员，或者限制其权利；  　（六）限制期货公司自有资金或者风险准备金的调拨和使用；  　（七）责令控股股东转让股权或者限制有关股东行使股东权利。  　 对经过整改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以及持续性经营规则要求的期货公司，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自验收完毕之日起3日内解除对其采取的有关措施。  　 对经过整改仍未达到持续性经营规则要求，严重影响正常经营的期货公司，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权撤销其部分或者全部期货业务许可、关闭其分支机构。  **第五十七条**　期货公司违法经营或者出现重大风险，严重危害期货市场秩序、损害客户利益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对该期货公司采取责令停业整顿、指定其他机构托管或者接管等监管措施。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可以对该期货公司直接负责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采取以下措施：  　 （一）通知出境管理机关依法阻止其出境；  　 （二）申请司法机关禁止其转移、转让或者以其他方式处分财产，或者在财产上设定其他权利。  **第五十八条**　期货公司的股东有虚假出资或者抽逃出资行为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责令其限期改正，并可责令其转让所持期货公司的股权。  　 在股东按照前款要求改正违法行为、转让所持期货公司的股权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限制其股东权利。  **第五十九条**　当期货市场出现异常情况时，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采取必要的风险处置措施。  **第六十条**　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应当满足期货公司审慎经营和风险管理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要求。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不符合要求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权要求期货公司予以改进或者更换。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要求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的供应商提供该软件的相关资料，供应商应当予以配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供应商提供的相关资料负有保密义务。  **第六十一条**　期货公司涉及重大诉讼、仲裁，或者股权被冻结或者用于担保，以及发生其他重大事件时，期货公司及其相关股东、实际控制人应当自该事件发生之日起5日内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提交书面报告。  **第六十二条**　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中介服务机构向期货交易所和期货公司等市场相关参与者提供相关服务时，应当遵守期货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并按照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要求提供相关资料。  **第六十三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与有关部门建立监督管理的信息共享和协调配合机制。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和其他国家或者地区的期货监督管理机构建立监督管理合作机制，实施跨境监督管理。  **第六十四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期货保证金存管银行等相关单位的工作人员，应当忠于职守，依法办事，公正廉洁，保守国家秘密和有关当事人的商业秘密，不得利用职务便利牟取不正当的利益。    **第七章　法律责任**  **第六十五条**　期货交易所、非期货公司结算会员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  　 （一）违反规定接纳会员的；  　 （二）违反规定收取手续费的；  　 （三）违反规定使用、分配收益的；  　 （四）不按照规定公布即时行情的，或者发布价格预测信息的；  　 （五）不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履行报告义务的；  　 （六）不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报送有关文件、资料的；  　 （七）不按照规定建立、健全结算担保金制度的；  　 （八）不按照规定提取、管理和使用风险准备金的；  　 （九）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  　 （十）限制会员实物交割总量的；  　 （十一）任用不具备资格的期货从业人员的；  　 （十二）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有本条第一款第二项所列行为的，应当责令退还多收取的手续费。  　 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有本条第一款第五项、第六项、第九项、第十一项、第十二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期货保证金存管银行有本条第一款第九项、第十二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  **第六十六条**　期货交易所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一）未经批准，擅自办理本条例第十三条所列事项的；  　 （二）允许会员在保证金不足的情况下进行期货交易的；  　 （三）直接或者间接参与期货交易，或者违反规定从事与其职责无关的业务的；  　 （四）违反规定收取保证金，或者挪用保证金的；  　 （五）伪造、涂改或者不按照规定保存期货交易、结算、交割资料的；  　 （六）未建立或者未执行当日无负债结算、涨跌停板、持仓限额和大户持仓报告制度的；  　 （七）拒绝或者妨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监督检查的；  　 （八）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非期货公司结算会员有本条第一款第二项、第四项至第八项所列行为之一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  　 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有本条第一款第三项、第七项、第八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  **第六十七条**　期货公司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期货业务许可证：  　 （一）接受不符合规定条件的单位或者个人委托的；  　 （二）允许客户在保证金不足的情况下进行期货交易的；  　 （三）未经批准，擅自办理本条例第十九条、第二十条所列事项的；  　 （四）违反规定从事与期货业务无关的活动的；  　 （五）从事或者变相从事期货自营业务的；  　 （六）为其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提供融资，或者对外担保的；  　 （七）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  　 （八）不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履行报告义务或者报送有关文件、资料的；  　 （九）交易软件、结算软件不符合期货公司审慎经营和风险管理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要求的；  　 （十）不按照规定提取、管理和使用风险准备金的；  　 （十一）伪造、涂改或者不按照规定保存期货交易、结算、交割资料的；  　 （十二）任用不具备资格的期货从业人员的；  　 （十三）伪造、变造、出租、出借、买卖期货业务许可证或者经营许可证的；  　 （十四）进行混码交易的；  　 （十五）拒绝或者妨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监督检查的；  　 （十六）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期货公司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或者撤销任职资格、期货从业人员资格。  　 期货公司之外的其他期货经营机构有本条第一款第八项、第十二项、第十三项、第十五项、第十六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  　 期货公司的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未经批准擅自委托他人或者接受他人委托持有或者管理期货公司股权的，拒不配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检查，拒不按照规定履行报告义务、提供有关信息和资料，或者报送、提供的信息和资料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  **第六十八条**　期货公司有下列欺诈客户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期货业务许可证：  　 （一）向客户作获利保证或者不按照规定向客户出示风险说明书的；  　 （二）在经纪业务中与客户约定分享利益、共担风险的；  　 （三）不按照规定接受客户委托或者不按照客户委托内容擅自进行期货交易的；  　 （四）隐瞒重要事项或者使用其他不正当手段，诱骗客户发出交易指令的；  　 （五）向客户提供虚假成交回报的；  　 （六）未将客户交易指令下达到期货交易所的；  　 （七）挪用客户保证金的；  　 （八）不按照规定在期货保证金存管银行开立保证金账户，或者违规划转客户保证金的；  （九）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欺诈客户的行为。  　 期货公司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或者撤销任职资格、期货从业人员资格。  　 任何单位或者个人编造并且传播有关期货交易的虚假信息，扰乱期货交易市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  **第六十九条**　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期货保证金存管银行提供虚假申请文件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骗取期货业务许可的，撤销其期货业务许可，没收违法所得。  **第七十条**　期货交易内幕信息的知情人或者非法获取期货交易内幕信息的人，在对期货交易价格有重大影响的信息尚未公开前，利用内幕信息从事期货交易，或者向他人泄露内幕信息，使他人利用内幕信息进行期货交易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单位从事内幕交易的，还应当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和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的工作人员进行内幕交易的，从重处罚。  **第七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下列行为之一，操纵期货交易价格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一）单独或者合谋，集中资金优势、持仓优势或者利用信息优势联合或者连续买卖合约，操纵期货交易价格的；  　 （二）蓄意串通，按事先约定的时间、价格和方式相互进行期货交易，影响期货交易价格或者期货交易量的；  　 （三）以自己为交易对象，自买自卖，影响期货交易价格或者期货交易量的；  　 （四）为影响期货市场行情囤积现货的；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操纵期货交易价格的行为。  　 单位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二条**　交割仓库有本条例第三十六条第二款所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期货交易所暂停或者取消其交割仓库资格。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三条**　国有以及国有控股企业违反本条例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以及其他有关部门关于企业以国有资产进入期货市场的有关规定进行期货交易，或者单位、个人违规使用信贷资金、财政资金进行期货交易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  **第七十四条**　境内单位或者个人违反规定从事境外期货交易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并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其境外期货交易。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五条**　非法设立期货交易场所或者以其他形式组织期货交易活动的，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非法设立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或者擅自从事期货业务的，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六条**　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供应商拒不配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调查，或者未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提供相关软件资料，或者提供的软件资料有虚假、重大遗漏的，责令改正，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七条**　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中介服务机构未勤勉尽责，所出具的文件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的，责令改正，没收业务收入，暂停或者撤销相关业务许可，并处业务收入1倍以上5倍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八条**　任何单位或者个人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宣布该个人、该单位或者该单位的直接责任人员为期货市场禁止进入者。  **第七十九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期货保证金存管银行等相关单位的工作人员，泄露知悉的国家秘密或者会员、客户商业秘密，或者徇私舞弊、玩忽职守、滥用职权、收受贿赂的，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第八十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一条**　对本条例规定的违法行为的行政处罚，除本条例已有规定的外，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决定；涉及其他有关部门法定职权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会同其他有关部门处理；属于其他有关部门法定职权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移交其他有关部门处理。    **第八章　附　则**  **第八十二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一）商品期货合约，是指以农产品、工业品、能源和其他商品及其相关指数产品为标的物的期货合约。  　 （二）金融期货合约，是指以有价证券、利率、汇率等金融产品及其相关指数产品为标的物的期货合约。  　 （三）保证金，是指期货交易者按照规定交纳的资金或者提交的价值稳定、流动性强的标准仓单、国债等有价证券，用于结算和保证履约。  　 （四）结算，是指根据期货交易所公布的结算价格对交易双方的交易结果进行的资金清算和划转。  　 （五）交割，是指合约到期时，按照期货交易所的规则和程序，交易双方通过该合约所载标的物所有权的转移，或者按照规定结算价格进行现金差价结算，了结到期未平仓合约的过程。  　 （六）平仓，是指期货交易者买入或者卖出与其所持合约的品种、数量和交割月份相同但交易方向相反的合约，了结期货交易的行为。  　 （七）持仓量，是指期货交易者所持有的未平仓合约的数量。  　 （八）持仓限额，是指期货交易所对期货交易者的持仓量规定的最高数额。  　 （九）标准仓单，是指交割仓库开具并经期货交易所认定的标准化提货凭证。  　 （十）涨跌停板，是指合约在1个交易日中的交易价格不得高于或者低于规定的涨跌幅度，超出该涨跌幅度的报价将被视为无效，不能成交。  　 （十一）内幕信息，是指可能对期货交易价格产生重大影响的尚未公开的信息，包括：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以及其他相关部门制定的对期货交易价格可能发生重大影响的政策，期货交易所作出的可能对期货交易价格发生重大影响的决定，期货交易所会员、客户的资金和交易动向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认定的对期货交易价格有显著影响的其他重要信息。  　 （十二）内幕信息的知情人员，是指由于其管理地位、监督地位或者职业地位，或者作为雇员、专业顾问履行职务，能够接触或者获得内幕信息的人员，包括：期货交易所的管理人员以及其他由于任职可获取内幕信息的从业人员，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人员。  **第八十三条**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批准设立期货专门结算机构，专门履行期货交易所的结算以及相关职责，并承担相应法律责任。  **第八十四条**　境外机构在境内设立、收购或者参股期货经营机构，以及境外期货经营机构在境内设立分支机构（含代表处）的管理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外汇管理部门等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施行。  **第八十五条**　在期货交易所之外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交易场所进行的期货交易，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第八十六条**　不属于期货交易的商品或者金融产品的其他交易活动，由国家有关部门监督管理，不适用本条例。  **第八十七条**　本条例自2007年4月15日起施行。1999年6月2日国务院发布的《期货交易管理暂行条例》同时废止。 |